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9. 25. 박균택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9. 26.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1.1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 22.)

상정 ·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17.)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박균택의원)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두어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그 제재의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응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4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2024. 10. 22. 개정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는 입법 취지가 인정됨.

다만, 2024. 10. 22. 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은 2025. 10. 23.부터 시행됨에 반하여,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일을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인 2025. 10. 23.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령상 명단 공개는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출국 금지의 침익적 성질을 감안할 때,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할 경우, 이미 명단공개 결정이 이루어져 3년간 공개되고 있는 사업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4조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박범계위원)

개정안을 반영하여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